36. 지게차 운전원에서 발생한 전립선암

성별	남성	나이	만 66세	직종	지게차 운전원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2002년 9월 16일 건설장비 운영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9월 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기저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있었으며, A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에 대한 추적관찰을 진행하였다. 2019년 해당 수치 이상으로 조직검사 시행 결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확인되어 B대학병원 내원하였다. 이후 전립선암 확진되어 B대학병원에서 2020년 2월 21일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RARP)을 시행하였고, 현재 질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는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이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1년 미상일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서 경비로 근무하였고,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총 30년 3개월이다. 근로자는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별도의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았으며 소속 사업장에서도 용접흄, 금속분진 등 유해물질에 대한노출을 부인하였다. 근로자가 근무 당시 탑승하였던 지게차는 5톤 지게차로, 현재는 정비의용이성을 위해 모두 7톤 지게차로 교체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5톤과 7톤을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근로자가 작업하였던 현장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 5톤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근로자는 외부에서 코일이 들어오면 지게차를 이용해 열처리 장소로 옮기고 이후 작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집하 장소에 다시 갖다 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출하는 다른 지게차가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가 야간 교대 작업에 노출된 기간은 경비 약 4년, 지게차운전 30년 1개월로, 전체 34년 1개월로 확인된다.

3 해부학적 분류

기타 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기저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있었으며, A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하면서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에 대한 추적관찰하고 있었다. 2016년 해당수치 이상으로 한 차례 조직검사 시행하였고 특이소견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 다시수치 이상으로 조직검사를 재시행하였고, 전립선암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전립선암이 확인되어 B대학병원에서 2020년 2월 21일 복강경근치적 전립선 적출술(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 RARP)을 시행하였고, 현재 질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암 확진전까지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증가 외에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 기저질환으로 협심증, 뇌경색, 고혈압 등이 있었고 우측 마비로 인해 A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제출된 의무기록 상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기업 규모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다. 일반 건강진단 결과 2014년 신체질량지수(BMI) 28.37로 비만에 해당하였고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었으나 2020년에는 비만 외에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흡연력은 없으며 음주력은 2014년 까지는 확인되나 2020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외에 직계가족의 전립선암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남, 1954년생)은 만 66세가 되던 2020년 2월, 전립선암에 진단되어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받았다. 근로자는 1981년부터 1984년 6월까지 △사업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8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업장 등에서 30년 1개월 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야간 교 대근무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신 진동, 디젤엔진 배출물질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근로자는 3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3교대 등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